

검수 규정

제정 : 1998. 04. 06.

개정 : 2015. 05. 08.

담당자 : 사무관리팀(02-950-5520)

----- 목 차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검수여부)
제5조(검수원칙)	제6조(사전사용금지)	제7조(검수유보)	제8조(입회의 요청)
제9조(검수확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서 구매, 제작, 수리되는 모든 물품과 영선 공사의 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의 주요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개정 2015. 05. 08)

1. 검수란 물품의 구매, 제작, 수리 및 영선 공사의 완성 내용을 지출결의서, 납품서, 시방서, 견적서 및 견본, 설계도면 등과 대조하여 확인하고 그 지급 대가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일을 말한다.
2. 요청부서란 물품구매를 위하여 수탁부서에 의뢰한 부서를 말한다.
3. 수탁부서란 요청부서로부터 의뢰받은 물품구매에 대하여 구매행위를 진행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모든 부서 및 기관에 적용된다.

제4조(검수여부) ① 검수는 요청부서의 담당자가 담당한다. (개정 2015. 05. 08)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탁부서의 확인으로 검수를 대신 할 수 있다. (개정 2015. 05. 08)

1. 차량유지에 필요한 물품
2. 외부에 직접 전달하여야 할 화환, 화분, 기념품 등
3. 교내에서 발간하는 신문
4. 부서의 행사진행을 위해 구매한 물품

제5조(검수원칙) ① 물품의 구매, 제조, 수리 및 영선 공사의 수탁부서는 견제서류와 계약서, 시방서, 도면, 카다로그, 견본, 설계도면 등 검수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검수부서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5. 05. 08)

② 검수 담당자는 제1항의 각종 자료와 물품 및 공사내용을 대조하여 품질, 수량, 가격 및 기타 모든 조건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5. 08)

- ③ 검수 담당자는 검수를 마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원안 서류에 검수 필인을 날인하여 관계서류와 함께 수탁부서에 이송한다. (개정 2015. 05. 08)
- ④ 품질에 대한 성분 또는 함량 및 수리, 시설, 공사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 대학교 내의 기관이나 전문가 또는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각종 자료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수할 수 없으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수탁부서장이 요청할 경우에는 가 검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주 자료가 구비되는 대로 본 검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05. 08)

제6조(사전사용금지) 검수할 물품 및 시설물은 검수전의 사용을 금한다.

- 제7조(검수유보)** ① 구매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물품구입지출결의서 및 청구서에 의하지 아니한 검수 또는 수탁부서의 검수 요청이 없는 때에는 검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05. 08)
- ② 제5조 제1항의 각종 자료, 지출결의서 및 청구서의 제반 내용과 현품이 다른 경우 또는 파손, 변질, 감량, 공사불량 기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수를 유보하고 즉시 수탁부서에 반송한다. (개정 2015. 05. 08)

제8조(입회의 요청) 다음의 경우에는 검수책임자가 관계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05. 08)

1.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물품 및 수리, 영선 공사에 한하여 수탁부서 또는 요청부서 담당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2. 운송사업자에 의하여 배달된 물품으로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운송업자 및 관계자의 입회하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증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검수확인) 사무관리팀에서는 반드시 검수 필인을 확인하고 물품 등의 대금을 지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04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한다.